

6.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247호 1998. 6. 20

주요 골자

- 가. 주택에 당첨된 자는 투기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당첨권의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투기적 요인이 없으므로 분양계약 체결이후 전매를 전면 허용하고 수도권 지역은 전매 허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의 연체료 부담 등을 덜어주고자 함.
- 나.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양가족이 있고, 당해지역 1년 이상 거주등으로 극히 제한되고 있으나 부양가족 및 당해지역 1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조합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자 함.
- 다. 현재는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매입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만 상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당첨자가 공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허용하므로써 실직등으로 주택분양을 포기한 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함.

개정 이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고금리로 인하여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 납부가 곤란하여 연체료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며, 기타 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 등을 완화하고자 함.